목 차

투 자 설 명 서 1
【 본 문 】 2

투 자 설 명 서

2024년 4월 24일

(발 행 회 사 명)

키움증권 주식회사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키움증권 키움 CD금리투자 상장지수증권 제9호 2,000,000증권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200,00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4년 4월 24일

2. 모집가액 : 200,000,000,000원

3. 청약기간 : 2024년 4월 24일

4. 납입기일 : 2024년 4월 24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시장조성은 발행회사 및 유동성 공급자인 키움증권이 행합니다.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표 주 관 회 사 명)

키움증권 주식회사

【 본 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상품의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상품의 매매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 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키움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3년 06월 22일 NICE신용평가 , 2023년 06월 23일 한국신용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경우,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으로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으며,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발행회사는 동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수 있으며 이는 사전 고지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상품은 특정 단위 이상으로만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실 수 있으며, 본문에 나오는 일부 내용(중도상환 등)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방식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11.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관

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신고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종목명 : 키움증권 키움 CD금리투자 상장지수증권 제9호]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기초지수(기초자산)	본 상장지수증권의 기초가 되는 아래 거래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해당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연동되어 본 증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 iSelect CD수익률 총수익 지수
2) 기초지수 산출기관	기초지수의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각 기관을 말합니다. -NH투자증권
3) 거래소	기초지수와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를 말합니다.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4) 관련거래소	본 증권의 기초지수와 관련된 전체 선물, 옵션 시장에서 계산대리인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각 거래소를 말합니다.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5)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이 정규거래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지수의 최종가격을 말합니다.
6) 지표가치 (IV : Indicative Value)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 1증권 당 실질가치를 말합니다. 발행인과의 일반사무관리계약에 의해 계산기관인 하나펀드서비스가 장종료 후 매 1회 산출하며, 매 거래소영업일 오전에 고시됩니다. 당일지표가치(IV) = 전일지표가치 x (당일 기초지수 종가 / 전일 기초지수 종가) - 제비용(일할)
7) 실시간 지표가치 (IIV : Intraday Indicative Value)	전일 지표가치에 실시간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출한 1증권 당 장중 실질가치를 의미합니다. 실시간지표가치(IIV) = 전일지표가치 x (실시간기초지수 가격 / 전일 기초지수 종가)
8) 괴리율	증권의 지표가치와 현재 거래되는 증권의 가격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괴리율(%) = (증권의 시장가격 - 증권의 지표가치) / 증권의 지표가치 x 100

9) 분배금	기초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배당수익을 증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 권리의 내용 - (4) 분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시장교란사유	시장교란사유는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아래의 (1) ~ (4)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거래장애(Trading Disruption) : 거래장애는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의 정규매매 마감시각(예정된 마감시각 포함) 직전 1시간 동안에 언제라도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및 옵션 종목의 거래 중단, 중지, 제한 및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그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종목의 시가비중의 20%이상에 대하여 거래 중단, 중지, 제한 및 지연 등이 발생한 것을 포함합니다. (2) 거래소장애(Exchange Disruption) : 거래소장애는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의 정규매매 마감시각(예정된 마감시각 포함) 직전 1시간 동안에 언제라도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및 옵션 종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그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종목의 시가비중의 20% 이상에 대하여 매매가격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조기폐장(Early Closure) :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 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 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12)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13)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고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14)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모두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15)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키움증권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키움증권 키움 CD금리투자 상장지수증권 제9호
기초지수		iSelect CD수익률 총수익 지수
발행총액		200,000,00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0원
발행수량		2,000,000 증권
납입일		2024년 04월 24일
발행일		2024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지수산출기관		NH투자증권
최종거래일		2034년 04월 10일 (예정)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2034년 04월 10일 (예정)
만 기 일		2034년 04월 12일 (예정)
만기상환금 지급일		2034년 04월 14일 (예정)
중도상환단위		10,000 증권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이전 4영업일까지의 매 상장거래소영업일 (단, 중도상환 신청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중도상환신청일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상장거래소영업일 및 거래소영업일 모두의 영업일이 중도상환 신청일이 되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은 순연된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의 익상장거래소영업일이 됩니다.)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
중도상환금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 이후 3거래소영업일
만기상환 및 중도상환 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분배금	지급여부	지급
	지급방식	재투자
	지급기준일	해당사항없음
	지급일	해당사항없음
기타사항		(1) 상기 지정된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등 기초지수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등은 다음 예정거래일로 변경됩니다. 만약 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2)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에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하여 본 증권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은 아래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중 "권리내용의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지정된 최종거래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8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지정된 지급일을 제외하고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에 해당 금원을 지급합니다. (5) 본문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기재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절차

당해 증권은 공모의 형태이나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하지않으며, 청약안내 및 배정에 관한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2) 증권의 발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3) 증권의 상장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항목	내용
상장거래소명칭	한국거래소
상장 예정일	2024년 04월 26일

2)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해 증권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23조의2를 충족하여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당해 증권은 발행후 한국거래소의 본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가 당해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149조의3의제2항(신규상장)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 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그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유동성 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4)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본 증권의 본질가치는 기초지수의 가격,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본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므로, 본 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요인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2) 본 증권의 최종거래일 이전의 매매방법
본 증권이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경우, 상장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지속적인 장내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자는 ETF(상장지수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 증권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최종거래일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 2(유동성공급회원)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키움증권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직접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키움증권 주식회사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상장되기 이전까지 전액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히,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을 전량 취득 후 상장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본 증권의 전량 혹은 상당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며, 본 증권이 상장된 이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본 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유동

성공급자에 의한 본 증권의 (최초)매각가격은상장일 전일 지표가치(IV)에 근거하여 결정하여 제시하게 되며, 이는 본 증권의 발행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최우선 매도호가)와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최우선 매수호가)간 차이를 그 매수호가로 나눈 값]이 0.5% 이내**로 유지되도록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면제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하며, 해당 사유 발생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중도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조건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중도상환청구 절차가 존재합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 권리의 내용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 방법과 절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이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여 투자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장폐지되는 경우 권리내용의 변경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상장폐지)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지수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만기상환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이하 “조기청산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타	제14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4(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1) 지정요건 :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국내 기초자산 3%, 해외기초자산 6%)의 2배 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경우
(2)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국내 기초자산 3%, 해외기초자산 6% 이하인 경우
-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3)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 적용
-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4)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 괴리율 추가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자동재개
* 괴리율이 확대(관리범위 3배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하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추가연장 가능

(5) 유동성공급자의 의무 및 공급계획

유동성공급자는 해당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의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증권의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벗어나 괴리가 발생할 시,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하여 가격 괴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매도, 매수주문의 가격 차이가 크게 확대될 경우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매도, 매수양방향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키움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장 주권등의 매매거래 제2절의 2(유동성공급호가)에 따라 유동성 공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증권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적절한 스프레드비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할 것이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재한 **최대호가스프레드비율(0.5%)**을 초과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매수호가별로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이상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서 호가스프레드비율이란 유동성공급자 및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의 "(최우선매도호가 -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수호가*100(%)"를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키움증권은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해당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을 위한 수동주문 및 자동주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장모니터링 및 헤지주문 시스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개발된 유동성공급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내역을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 언제든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내역을 공시할 것입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키움증권은 **헤지자산/LP전용계좌 구분 관리, 만기/조기 상환시 불공정거래 매매 방지, ETN발행대금의 헤지자산 운용 외 용도제한, ETN의 기초자산과 헤지자산 간 불일치 최소화, 헤지자산의 건전성확보 및 이를 위한 내부 승인 절차, 헤지거래의 시장충격 완화, 발행사가 백투백 헤지 또는 제 3자 유동성공급자 이용 시, 운용지침 마련 여부** 등 헤지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0.5%)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

1) 계산기관

본 증권의 가치산출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계산기관"이라 함)은 발행인과 일반사무관리 계약을 맺은 하나펀드서비스입니다.

계산기관 명칭 : 하나펀드서비스

계산기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명동사옥 10층

2) 지급대리인 및 수탁대리인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팀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71(여의도동) 동화빌딩 2층

3) 유동성공급자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할 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배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동성공급자 명칭 : 키움증권 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ETN상품에 관한 사항

(1) 상품 개요

항목	내용
증권명	키움증권 키움 CD금리투자 상장지수증권 제9호
기초지수명	iSelect CD수익률 총수익 지수
투자전략	본 ETN의 기초지수인 iSelect CD수익률 총수익 지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매 영업일 16시30분에 고시하는 CD금리(91일)의 수익률(신용등급AAA, 시중은행)을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CD금리를 1배수로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이나,**CD금리와 동일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본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하여 국내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ETN 시장 구조

ETN은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발행회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 시장으로, 개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경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유동성공급자에 의해 호가가 제공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돕습니다.

(3) 시장참가자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발행사	ETN 발행 주체
유동성공급자(LP)	시장에서 호가제공 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 역할 수행
일반사무관리회사	발행사를 대신하여 ETN 사무처리 업무수행 (IV계산, ETN 환매 정산 금액 산출)
지수산출기관	ETN상품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
iiV산출기관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하여 제공되는 iiV를 산출하는 기관
투자자	ETN 매매(개인 및 법인 투자자)

2. 예상손익구조

(1) 손익구조

본 증권은 만기 시 또는 중도상환 시 지표가치(Indicative Value)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지표가치(IV)는 기초지수 수익률에서 보수 등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초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제비용, 세금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비용의 지표가치 반영은 실제 지급일에 관계없이 지표가치에서 일할로 차감합니다.

그러나, 본 증권의 지표가치가 산식에 따라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까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 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2) 제비용

구분		내용	연간비율(%)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회사(운용)보수	운용보수 및 발행 관련비용	-0.14
	기초지수 이용비용	기초지수 라이센스 이용료	0.01
	일반사무 비용	지표가치 및 과표기준가격 산출 등 사무관리 위탁보수	0.02
	기타 비용	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등	0.13
합계		-	0.02

(3) 예상손익구조

1) 이론적 투자성과는 최근 5년치 지수의 시계열 데이터와 아래와 같은 값을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만기 지표가치는 발행일 이후 매일의 기초지수 변동 및 이에 따른 비용이 반영되어 결정되며, 가정한 각각의 수익률 및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 참고자료이며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용(%)	일수	투자원금	기초지수	가격승수
0.02	365	100만원	100.000	1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원)	누적 제비용(원)	기말 지표가치(원)
0	100.00				1,000,000
1년	101.64	1.6%	202	202	1,016,179
2년	102.45	0.8%	204	406	1,024,077
3년	103.46	1.0%	206	612	1,034,035
4년	106.46	2.9%	209	821	1,063,819
5년	110.50	3.8%	211	1,031	1,103,961

※ 위 표는 2019년 03월 04일 기초지수가격을 100으로 산정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KOFR 지수와의 수익률 비교
- 기초지수 : iSelect CD수익률 총수익 지수
- 비교지수 : KOFR 지수

기간			기준일 : 2024 년 03 월 04 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연초 이후
수익률 (%)	해당 기간	기초지수	0.94	1.90	3.79	7.86	10.50	0.64
		비교지수	0.90	1.81	3.65	6.94	9.26	0.65
	연평균	기초지수	3.97	3.92	3.79	2.55	2.02	3.82
		비교지수	3.81	3.73	3.65	2.26	1.79	3.86
변동성	기초지수		0.17%	0.18%	0.16%	0.14%	0.12%	0.16%
	비교지수		0.16%	0.17%	0.16%	0.14%	0.12%	0.17%

※ 위 표는 기준일인 2024년 03월 04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6개월/1년/3년/5년/연초이후 기초지수와 비교지수의 수익률과 변동성을 산출하였습니다.

3. 권리의 내용

(1) 본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본 증권은 기초지수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구조이므로 본 증권의 보유자는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만기 및 중도상환 지급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증권 보유자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청구 절차는 별도의 의사표시나통지 없이도 만기일에 자동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하며,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본 증권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 6%(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2) 만기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1) 본 증권의 1증권당 만기시 지급액은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2)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합니다.
3) 발행인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의된 만기지급액 평가산식에 의하여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을 산출하고, 지급대리인과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본 증권의 지급사무를 의뢰합니다.
만기지급액 (세전)=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지표가치 X 보유증권 수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지급이 완료됩니다.

만기 상환	결정일	최종거래일 (T일)
	지급일	만기일 : T+2일 만기 지급일 : T+4일
	가격결정방법	최종거래일 지표가치(IV)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1)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

2)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 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평가가격의 98%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세부 내용

구분		해당사항
중도 상환	신청방법	본 증권 보유자는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에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가 정한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고객의 경우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중도상환신청을 11시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이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4:00까지 중도상환 요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청가능일	발행일 익 거래소 영업일로부터 만기상환액 결정일 이전 4거래소영업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
	신청불가능일	만기상환액 결정일 이전 3거래소영업일부터 중도상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단위	**10,000증권(10억원, 발행가액 기준)** ※ 헤지 물량으로 인한 기초자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일 최대 중도상환 신청한도를 **100,000증권(100억원,발행가액 기준)**으로 제한합니다. ※ 중도상환단위 예외 해당 ETN의 상장폐지사유 발생(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7), 발행사 영업중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내매도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중도상환단위 수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철회	투자자는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한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가 정한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고객의 경우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중도상환신청 철회를 13:30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접수된 중도상환신청 철회 요청의 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요청의 철회는 중도상환을 요청한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 요청 철회 건을 접수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14:00까지 접수되지 않은 철회의 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정일(평가일)	중도상환 신청일 상장거래소 익 영업일 : T+1일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 : T일 중도상환금 지급일 : T+3일
	가격결정방법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거래소 영업일에 산출될 지표가치 *중도상환 가격의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거래소 영업일 종가로 산출되는 지표가치(IV)를 의미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상장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각 회원사별 마감시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한을 넘겨 철회 신청이 이뤄질 경우, 동 철회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신청 시부터 해당 증권은 처분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신청 철회 시까지 유지됩니다. 중도상환신청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중도상환신청일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상장거래영업일이 중도상환 신청일이 되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 결정일은 순연된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의 상장거래소 익 영업일이 됩니다.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에 거래소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의 사유로 기초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하는 가격 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매 거래일로 순연합니다.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동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행인이판단하고, 본 증권의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유동성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은 본 증권의 중도상환처리주기를단축하거나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능기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본 증권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 중도상환 일자별 프로세스

구분	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
기간	T일	T+1	T+3	T+4

투자자	회원사에 중도상환신청 (처분제한조치)		현금수령	
회원사	중도상환내역 확인 및 예탁원 통보		투자자 계좌에 상환금액 입금	
발행사	중도상환내역 확인 및 승인	평가 및 연기 (시장교란 시 안내)	상환대금 예탁원 송금 변경상장 신청 (17시까지)	
사무 관리 회사		중도상환금액 확정 및 통보		
예탁결제원	신청내역 취합 및 발행사 통보 신청수량 처분제한		상환대금 회원사 지급 ETN증권 소각 거래소에 상환내역 통보	
거래소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4) 분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본 ETN상품의 경우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현금 분배금 지급이 없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조정 및 계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있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의 변경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증권의 어떠한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의 조기상환 또는 권리내용의 변경에 열거하지 못하거나 유가증권시장 해당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조기상환 사유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폐지)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 '(2) 조기상환 방법'에 따라 증권을 조기상환하고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조기상환의 발생사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 지급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조기상환일은 각 호의 사유발생일을 의미합니다. 단, 사유발생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조기상환일이 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제149조의 7(상장폐지)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상장폐지)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지수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만기상환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이하 “조기청산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타	제14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증권의 지급일 이전이라도 투자자에게 해당 사유 및 조기상환의 발생사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 지급액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상환일은 발행인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써 발행인이 조기상환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① 당해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력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되거나, 발행인에게 당해 증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증권을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에서 당해 증권의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장교란사유,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적으로 8예정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정되는 경우
④ 기초지수 구성종목 발행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아래 '3) 권리내용의 변경사유 및 조정내용'에 따른 증권의 권리내용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⑤ 거래소가 당해 증권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공시하는 경우
⑥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이상 당해 증권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⑦ 그 외 발행인이 해당 증권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 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2의5에 의해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②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③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가격: 사유발생일 익일(T+1)에 산출되는 사유발생일(T)의 최종지표가치. 다만 시장교란 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
·청산금액 지급일: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2) 조기상환 방법

1) 당해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상환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 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당해 증권에 대하여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행인은 조기상환 지급액 지급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상환의무나 금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상환가격결정일의 지표가치(IV)에 따라 조기상환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1)의 2)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 발생 후에 위 1)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지수 또는 그 구성종목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조기상환결정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회사의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보유자에의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1) 지수산정의 오류
당해 증권의 기초지수 산출은 기초지수 산출기관 (이하 지수제공자)의 소관이며, 지수제공자의 기초지수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중도·만기상환 금액이 잘못 산정·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기초지수의 변경 및 중단
- 지수제공자가 기초지수의 산출 발표를 중단하고 그 대신 다른 기관이 이를 발표하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새로 발표되는 지수가 종전의 기준지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수를 기준지수로 정하기로 합니다.

- 지수제공자가 기초지수의 산출방식 또는 구성종목을 변경함에 따라 중간·만기상환지급액의 산출조건 및 기타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수제공자가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지수를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화,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지수를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은 제외), 발행인은 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변경 전 기초지수의 구성종목(다만, 당해 종목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최종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수제공자가 기초지수의 산출을 중단할 경우 발행인은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중단 직전에 지수제공자가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등 기초지수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기초지수와 관련하여 기초지수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혹은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상관례에 따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기초지수, 기초지수 결정시점, 기타 지급일 등 당해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수제공자의 기초지수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급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추후 정정발표 등으로 계산대리인이 정확한기초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당해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기초지수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지수의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

형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가격결정일 이전까지의 특정 기간중에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노동쟁의, 정전, 통신장애,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당해 증권과관련한 위험회피거래(비거주자와의 모든 거래를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관행에 따라 기초지수의 가격 등 당해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최종거래일 및 중도상환 결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장폐지되는 경우, 최종거래일 및 중도상환 결정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거래일 및 중도상환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해당 사유 발생 전후에 본 증권의 가격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또는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5제3항에 따라 본 증권의 최초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액면분할 및 병합 사유 등으로 인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단수주의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이나 처리방식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7) 아래 규정을 포함한 본 증권의 상장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상장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권리를 변경할 경우, 본 신고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 변경기준
(※20.7.23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9제2호의3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은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장지수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과 만기일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변경한다.
가. 최종거래일 : 상장폐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만기일 : 가목에 따라 변경된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2)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변경한다. 이 경우 최종거래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만기일을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가.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이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후 매매거래일
다. 그 밖에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방법이나 상장법인이 거래소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한다.

(4)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1) 본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소정의 관리절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장 소정의 청산 및 파산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2) 본 증권에 대하여 이러한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파산법,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인이 관계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 준거법과 재판관할

1)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에 관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증권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2)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기재사항이 진실**또는**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파생결합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금융투자상품으로**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기초자산의 매도 시 음의 괴리율, 투자시점 대비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시점의 기초지수 보합 또는 상승 시에도 누적된 총보수 등에 따른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괴리율 위험	본 증권의 경우**추가발행 제한/발행 재개, 발행회사 신용상태, LP호가스프레드 확대/유동성공급 제한, 가격제한폭/시차**등으로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혹은 유동성 호가제출면제 시간대에 일반 투자자들 간의 거래로 인해 본 ETN증권의**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할증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ETN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단기간내에 급등락 할 경우, **기초지수의 산출 주기로 인해 ETN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할인/할증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의 문제로 인해**기초지수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당사는 본 증권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의 고의, 중과실, 사기로 인하여 본 증권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표가치 및 실시간 지표가치와 유동성 호가 괴리 위험	●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기초지수인 iSelect CD수익률 총수익 지수로 산출됩니다. ● 본 기초지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매 영업일 16시 30분 산출 및 고시하는 CD금리(91일물)를 추종하며, 기초지수 종가는 매 영업일 19시 공시됩니다. 따라서 매 영업일 15:30에 한국거래소에서 결정된 본 증권의 종가와 19시에 결정된 지표가치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0.5%)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충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생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헤지거래로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만기 가격결정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위험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본 증권의 가치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도 본 증권의**발행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자본의 50/100으로 ETN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종목에 대한 추가상장 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ELS 등 장외 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2024년 3월 20일자로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 위험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상장관련 위험

구 분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당해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의 유동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현금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해 증권을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지급액 산정방식과 그에 따른 지급일을 포함한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을 시장 관행에 따라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해, 기초지수가 이를 초과하여 변동하더라도 ETN 가격은 상하 30%(레버리지 및 인버스 2X는 상하 60% 이내) 이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거래정지/관리종목 지정 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ETN의 거래가 중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정지 사유 ○ 발행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익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 발행자 신용위험 등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거래 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된 기간까지 또한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4] 거래소 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4.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주요내용
조기상환 위험	당해 증권이 상장폐지되거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이 당해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생 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청구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하는 날(T)과 상환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T+1)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시 상환청구일로부터**상환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상장지수증권의 가치변동에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 시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험	당해 상장지수증권은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지수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발행시의 기초지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발행인은 당해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과정에서 기초지수의 투자전략이나 구성종목, 구성비율이 대규모 변경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성격이 당초의 투자목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표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 관행에 따라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상환시킬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해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이 교란일로 지연되고, 발행인이 계산대리인이 되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금성 위험	당해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당해 증권의 보유자는 본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처리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금의 환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에도 발행인은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품관련 위험

구 분	주요내용
기초자산 위험	당해 상장지수증권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91일물)을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의 가치하락에 연동되어 기초지수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 상품의 가격 또한 하락할 수 있는 상장지수증권과는 달리, 당해 상장지수증권은 CD수익률이 제비용율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장지수증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CD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여 CD수익률이 제비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장지수증권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수익률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상품으로 분류되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험	당해 상장지수증권은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지수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발행시의 기초지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발행인은 당해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과정에서 기초지수의 투자전략이나 구성종목, 구성비율이 대규모 변경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성격이 당초의 투자목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표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 관행에 따라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상환시킬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해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위험

구 분	주요내용
지수산출방식의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지수를 관리하는 지수산출기관의 사정으로 지수산출 방식이 변경되어 기존의 투자전략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지수산출기관 혹은 기초지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의 사정,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 당해 증권의 투자전략이 중단되거나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금성 위험	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의 매매, 혹은 중도상환 요청을 통해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하며, 본 증권의**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이 0.5% 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수 있으며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 공급의무 해태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아니하거나 유동성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 법률상의 위험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얻게 되는 초과소득(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 -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다만,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당해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유동성 공급관련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는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지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에 근거하여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당해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08:30~09:00), 증권시장 개시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0.5%)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적수익률 괴리 위험	본 상품의 경우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상품이나, 발행사 보수, 기타 수수료, 헤지비용 등 각 종 제반비용으로 인해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사항	발행인은 당해 상장지수증권의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해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당해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방면에서 투자 위험을 검토하여야 하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사항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 및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발행인은 당해 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조기청산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청산 위험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3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청산 될 수 있습니다.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 익일(T+1)에 산출되는 사유발생일(T)의 최종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본 증권이 조기청산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지수

본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는 'iSelect CD수익률 총수익 지수'로 금융투자협회에서 16시 30분 고시하는 CD91금리를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지수입니다.

(1) 기초지수 소개

1. 지수명칭 : iSelect CD수익률 총수익 지수

2. 지수개요
: CD금리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 및 거래에서 해당 계약, 거래에서 지급, 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iSelect CD수익률 총수익 지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매 영업일 16시30분에 고시하는 CD금리(91일)의 수익률(신용등급AAA, 시중은행)을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3. 기준시점 : 2018. 01. 01.

4. 기준지수 : 10,000pt

5. 산출시간 : 한국시간 09:00:00 ~ 17:00:00
※ 기초지수 산출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09:00:00~ 17:00:00 동안 실시간으로 산출되며 지수 종가는 19:00:00에 발표됩니다. 따라서 09시부터 15시 30분까지 기초지수가 실시간으로 IIV에 반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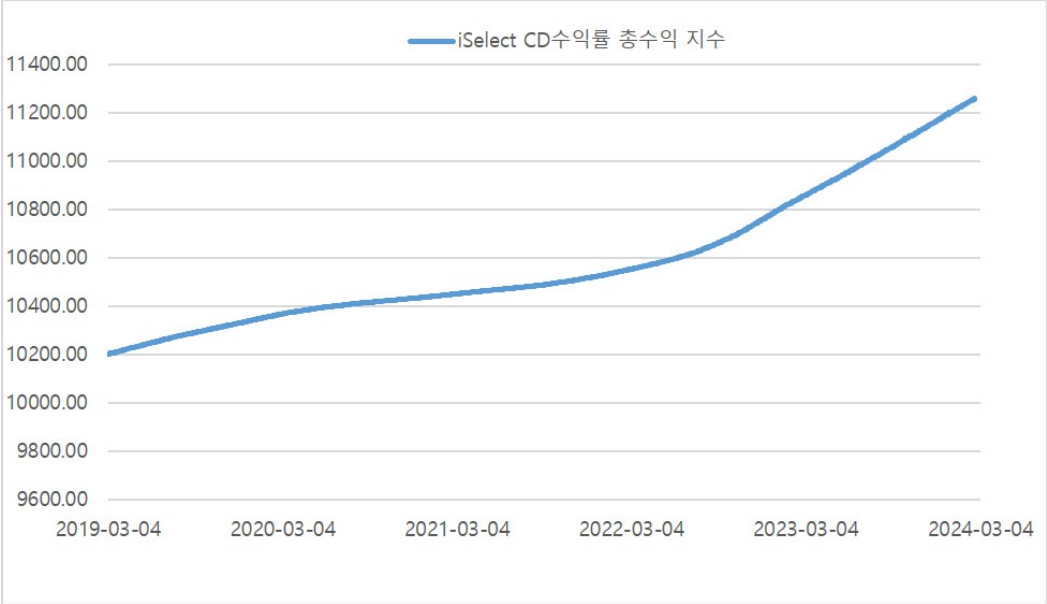
6. 지수방법

3. 세부 산출방식

항목	내용
산출방식	**금융투자협회에서 매 영업일 오후 16시30분에 고시하는 CD91 수익률을 적용하여 연 365일 기준 복리 누적하여 지수 산출** **(신용등급 AAA, 시중은행)** ※ 장 중 발표하는 지수는 직전 영업일에 발표된 CD수익률을 적용하며, 장 마감 후, 종가지수는 당일 고시(16:30에 고시)된 CD 수익률 적용 ※ 단, 금융투자협회 CD91일 고시 수익률 데이터 입수가 어려운 경우, 직전 CD91일 고시수익률 사용
일별수익률	$R_t = CD_t \times \frac{\text{경과일}}{365}$ CD_t :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T일자 수익률 ※ (참고) 지수 산출일자가 비영업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수익률을 적용하며,비영업일의 수익률은 직전 영업일에 반영됨
지수값	$IDX_t = IDX_{t-1} \times (1 + R_t)$ IDX_t : T일자 지수 IDX_{t-1} : T일자 지수의 전일(전영업일) 지수
대표지수	총수익지수
Duration	0.25Y

(2) 기초지수 수익률 (기준일: 2024.03.04)

기간		기준일 : 2024 년 03 월 04 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연초 이후
수익률(%)	해당기간	0.94	1.90	3.79	7.86	10.50	0.64
	연평균	3.97	3.92	3.79	2.55	2.02	3.82
변동성	해당기간	0.17%	0.18%	0.16%	0.14%	0.12%	0.16%



※ 수익률 예시

① 상승 후 하락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		0.00		100.00
1	105	5.00%	0.02	0.02	104.98
2	115	9.52%	0.02	0.04	114.95
3	107	-6.96%	0.02	0.07	106.94
4	99	-7.48%	0.02	0.09	98.92
5	94	-5.05%	0.02	0.10	93.91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6.00%
	연률화	-1.23%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6.09%
	연률화	-1.25%

② 하락 후 상승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		0.00		100.00
1	97	-3.00%	0.02	0.02	96.98

2	90	-7.22%	0.02	0.04	89.96
3	80	-11.11%	0.02	0.05	79.95
4	95	18.75%	0.02	0.07	94.92
5	102	7.37%	0.02	0.09	101.9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00%
	연률화	0.4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1.90%
	연률화	0.38%

③ 지속 상승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		0.00		100.00
1	103	3.00%	0.02	0.02	102.98
2	108	4.85%	0.02	0.04	107.96
3	112	3.70%	0.02	0.06	111.93
4	120	7.14%	0.02	0.09	119.90
5	121	0.83%	0.02	0.11	120.88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1.00%
	연률화	3.89%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0.88%
	연률화	3.87%

④ 지속 하락

투자기간 (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		0.00		100.00
1	95	-5.00%	0.02	0.02	94.98
2	88	-7.37%	0.02	0.04	87.96
3	87	-1.14%	0.02	0.05	86.95
4	80	-8.05%	0.02	0.07	79.94
5	78	-2.50%	0.02	0.09	77.92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2.00%
	연률화	-4.85%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2.08%
	연률화	-4.87%

3. 기초지수 산출기관

NH투자증권(iSelect)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본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및 산출기관(NH투자증권)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키움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해당사항 없음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의 개요

(단위: 원)

항목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예정)(1)	200,000,000,000
발행제비용(2)	61,990,000
순수입금[(1)-(2)]	199,938,010,000

(2) 발행 제비용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0,000,000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발행분담금의 요율) 1항 제4호
상장심사수수료	2,000,000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0]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상장수수료	9,990,000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0]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예탁원수수료	40,000,000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합계	61,990,000	-

※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과 관련된 일부 비용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액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ETF, ETN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표 (2024년 03월 29일 현재)

(단위: 억원)

구분			ELS/ELB						DLS/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원금 지급형	2021년	건	77	1	78	2	1	3	24	3	27	-	-	-
		금액	24,766	200	24,966	262	200	462	3,828	2	3,830	-	-	-
	2022년	건	110	7	117	12	1	13	18	2	20	-	-	-
		금액	20,945	10	20,955	85	2	87	6,626	222	6,848	-	-	-
	2023년	건	292	1	293	203	1	204	22	3	25	18	1	19
		금액	25,335	8	25,343	23,308	8	23,316	3,574	400	3,974	2,798	100	2,898
	2024년	건	45	-	45	45	-	45	-	-	-	-	-	-
		금액	703	-	703	703	-	703	-	-	-	-	-	-
	합계	건	524	9	533	262	3	265	64	8	72	18	1	19
		금액	71,748	218	71,966	24,357	210	24,567	14,028	624	14,651	2,798	100	2,898
원금 비보장형	2021년	건	404	-	404	105	-	105	3	-	3	-	-	-
		금액	5,742	-	5,742	599	-	599		-		-	-	-
	2022년	건	584	-	584	20	-	20	3	-	3	-	-	-
		금액	7,898	-	7,898	266	-	266		-		-	-	-
	2023년	건	844	4	848	314	-	314	3	-	3	3	-	3
		금액	12,747	9	12,756	4,328	-	4,328		-			-	
	2024년	건	162	-	162	162	-	162	-	-	-	-	-	-
		금액	1,678	-	1,678	1,678	-	1,678	-	-	-	-	-	-
	합계	건	1994	4	1998	601	-	601	9	-	9	3	-	3
		금액	28,064	9	28,073	6,870	-	6,870		-			-	
합계	2021년	건	481	1	482	107	1	108	27	3	30	-	-	-
		금액	30,508	200	30,708	861	200	1,061	3,828	2	3,830	-	-	-
	2022년	건	694	7	701	32	1	33	21	2	23	-	-	-
		금액	28,843	10	28,853	350	2	352	6,626	222	6,848	-	-	-
	2023년	건	1136	5	1141	517	1	518	25	3	28	21	1	22
		금액	38,082	17	38,099	27,635	8	27,643	3,574	400	3,974	2,798	100	2,898
	2024년	건	207	-	207	207	-	207	-	-	-	-	-	-
		금액	2,381	-	2,381	2,381	-	2,381	-	-	-	-	-	-
	합계	건	2518	13	2531	863	3	866	73	8	81	21	1	22
		금액	99,812	227	100,040	31,227	210	31,437	14,028	624	14,652	2,798	100	2,898

구분			ELW						ETN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원금 지급형	2021년	건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2022년	건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2023년	건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2024년	건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합계	건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원금 비보장형	2021년	건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2022년	건	-	-	-	-	-	-	8	-	8	5	-	5

		금액	-	-	-	-	-	-	2,600	-	2,600	1,700	-	1,700
	2023년	건	-	-	-	-	-	-	3	-	3	3	-	3
		금액	-	-	-	-	-	-	700	-	700	700	-	700
	2024년	건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합계	건	-	-	-	-	-	-	11	-	11	8	-	8
		금액	-	-	-	-	-	-	3,300	-	3,300	2,400	-	2,400
합계	2021년	건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2022년	건	-	-	-	-	-	-	8	-	8	5	-	5
		금액	-	-	-	-	-	-	2,600	-	2,600	1,700	-	1,700
	2023년	건	-	-	-	-	-	-	3	-	3	3	-	3
		금액	-	-	-	-	-	-	700	-	700	700	-	700
	2024년	건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합계	건	-	-	-	-	-	-	11	-	11	8	-	8
		금액	-	-	-	-	-	-	3,300	-	3,300	2,400	-	2,400

나. 신용환산액 (2024. 03. 29 기준)

거래상대방명	ELS/ELB	ELW	기타파생상품	계
기타	57,145,753,488	-	1,272,274,667	58,418,028,155
합계	57,145,753,488	-	1,272,274,667	58,418,028,155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이란 거래상대방의 상황이 악화되어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원금 × 신용환산율) 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2)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관련계약	통화계약	주식	기타
1년이하	0.0%	1.0%	6.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12.0%
5년초과	1.5%	7.5%	10.0%	15.0%

주3) 'ELS+ ELB+ ELW+ DLS+ DLB'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상대방만 표시하고 나머지 신용환산액은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
예) 거래상대방 A에 판매한 만기 3년 짜리 ELS(100억원)을 헤지하기 위해 BTB거래 상대방 B로부터 옵션을 사왔을 경우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시가평가 95억) + (명목금액 100억원 × 신용환산율 8%) =103억

2. 세금에 관한 사항

(1) ETN세제 현황

① 증권거래세 : 비과세 【증권거래세법】

② 배당소득세【소득세법】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총수익지수 등)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Min(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매매차익	환매 (중도, 만기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장내매도	배당소득세 과세 - Min(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매도가-매수가±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2항】

※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

- 산출주기 : 매 영업일 국내 장종료 후 1회 산정.
- 산출기관 : 하나펀드서비스

※ 과세표준 계산 방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개인, 외국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ETF와 동일)	내국법인* (ETF와 상이)	외국법인** (ETF와 동일)
원천징수여부	O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X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Δ 【법인세법 제93조】

* ETF의 경우 원천징수【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3)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및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공시제도

(1) 정기공시
- 상품 및 발행자 관련 주요 투자지표를 신고
○ (일일신고) 지표가치(IV),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
○ (분기별신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 수시공시

- 상품 및 발행자 신용위험 등 관련 중요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
○ 발행자(보증인)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정기변경, 수시변경)
○ 발행자(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경우
○ 기초지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 기초지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5%를 초과하는 지수구성종목의 교체가 있는 경우
○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정정의 경우
○ 유동성공급계약(계획) 체결, 변경, 해지 등의 경우
○ 괴리율이 일정비율(국내자산:1%,해외자산:2%)을 초과하는 경우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익금 분배: 분배금 지급기준일부터 3일전까지(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기준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 해당 증권의 병합 또는 분할을 위해 소유자명세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장폐지 예고

-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공시
○ 만기 1개월 전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교체기준에 해당한 경우
○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00%에 미달한 경우

(4) 해명요구

- 상장지수증권과 관련하여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과 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해명 요구시.

4. 기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의 다른 부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본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개시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